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445호
----------	--------

2021. 03. 16.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3. 2. 양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5. 1.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
회

2020. 5. 12. 상정 · 심사 보류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
회

2021. 3. 16.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교육안전에 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령
 - 제출된 조례안의 관계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동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지방자치단체은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되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책안전기획관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한 바, 양천구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
-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한 바, 제1호에서 "학생"의 범위를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양천구에 소재한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으로 정하고, 제2호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생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한 바, "교육활동"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는 활동 등으

로 정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교육계획 방침으로 인해 수행하는 교육활동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교육안전의 범위로 교육활동 안전, 교육환경 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급식안전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교육기관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대해 안전을 도모하도록 범위를 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교육안전 지원계획에는 교육안전 지원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교육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안전국장, 교육지원과장, 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관련 담당 과장, 양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이상 교원, 교육안전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교육안전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인천광역시 동구 2개구로 조사됨.
-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을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교육기관 내에서 학교장의 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중복되는 점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445호
----------	--------

제출년월일: 2021년 3월 16일
제출자: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에서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산 낭비를 막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3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양천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함(안 제1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교육기관 안팎의”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안전문화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5. 그 밖의 사항 : 교육 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4조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3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교육활동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u></p> <p>2. (생 략)</p> <p>3. <u>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u></p> <p><신 설></p> <p>4. (생 략)</p> <p>5. <u>시설안전 : 교육기관의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u></p> <p>6. <u>급식안전 : 교육기관의 급식과 관련된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p>	<p>제3조(교육안전의 범위) ----- ----- -----.</p> <p>1. ----- <u>관내</u> ----- ----- --</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u>안전문화 :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u>그 밖의 사항 : 교육 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u></p> <p><삭 제></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p>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략)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행정지원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